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205호	제 출 자	홍태의의원 외 5인
제 출 일	2022. 12. 08.	회부연월일	2022. 12. 08.

1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개정(2020.10.20.)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부칙(제713호) 제2항 유효기간 현행화

3. 검토의견

- 부칙 제713호 제2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“2015년 11월 23일” 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유효기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48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